

청주지방법원 2024. 8. 9 선고 2024가단6188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, 담당변호사 신인순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4. 7. 19.

판 결 선 고 2024. 8. 9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48,747,707원 및 그 중 48,224,207원에 대하여 2024. 2. 6.부터 2024. 7. 5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김제시 C 답 493㎡ 중 33/493지분에 관하여
가.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3. 10. 11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B은 피고 A에게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23. 10. 12. 접수 제214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이유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)

판사 김현룡

별지